

제9회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

‘제주지역을 변화시키는 성 주류화 전략’

의원 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2023년 9월 5일(화) 15:00~17: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1층)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지정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Jeju Gender Impact Assessment Center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5년부터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주지역의 성인지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연 1회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더욱더 의미가 큼니다.

우리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의회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2019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의회 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23년에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회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주제는 ‘의원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부문별 전문가들과 함께 의원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따른 어려운 점, 성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제발표를 해 주실 태희원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님,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님을 비롯하여,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고명희 모두의 상담소 대표님, 선민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님,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김은정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성인지정책팀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서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해주셨습니다.

또한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님, 성인지정책 컨설턴트와 관계 공무원들, 지역 내 활동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제주지역 성인지정책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미래에 성평등한 제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5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문순덕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회 제주 성인지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이 '의원 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감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문순덕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발표와 패널로 참석하시는 전문가 여러분과 내빈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2012년 성별영향평가법 시행으로 2012년부터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도입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는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성차별적 요소를 발굴하고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의원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개선할 부분과 과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충남도의회 사례를 통해 제주의 현황을 짚어보고, 제주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법이 도출되어 앞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례 제·개정이 이뤄지는 성평등한 제주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민석

의원 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2023년 9월 5일(화) 15:00~17: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1층)

프로그램

구분	시 간	내 용
등록	14:50~15:00	《등록》
1부 개회식	15:00~15:10	《개회사 및 축사》 사회: 김민선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장) • 개회사: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 축 사: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2부 포럼	15:10~15:50 (40')	《발표》 발표 1: 충청남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과 및 개선방안 - 태희원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2: 제주도의의회 의원 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현황과 과제 -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15:50~16:50 (60')	좌장: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토론》 • 고명희 (모두의 상담소 아워 대표) •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선민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 김은정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성인지정책팀장)
	16:50~17:00	마무리 및 폐회

목 차

[개회사 및 축사]

- 개회사: 문순덕(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 축 사: 김경학(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발표]

◆ 발표 1: 충청남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과 및 개선방안 7

- 태희원(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 2: 제주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현황과 과제 23

- 이화진(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고명희(모두의 상담소 아워 대표)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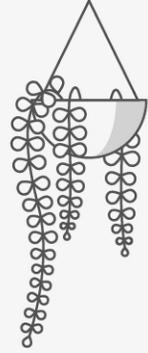
- 조은희(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5

- 선민정(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50

- 김은정(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성인지정책팀장) 53



발표 1



충청남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과 및 개선방안

태희원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충청남도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과 및 개선 방안

태희원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1

Contents

- I. 의원발의조례안 성별영향평가 개요
- II. 충청남도의회 내부의 추진체계와 추진근거
- III. 추진상 애로사항 및 향후 개선과제

2

I. 의원발의조례안 성별영향평가 개요

3

1. 추진 배경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정부발의 법령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행 의무화**
 -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제·개정되는 모든 정부발의 법령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정책의 근거로 작용되는 법령에 대한 사전적 성별입법영향평가를 하고, 이를 통하여 차별적인 정책을 사전에 방지하는 성평등한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짐(박선영, 2012)
- **성별영향평가 적용 대상에서 입법기관인 의회의 의원발의 법률안은 제외되는 한계**
 -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도민 요구도와 체감도가 높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 해당 제·개정안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인 입법 사전 방지 필요**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성인지 관점에서 사전 검토, 개선의견 반영하는 체계 운영 필요

자료: 박선영(2012), 여의도에서 젠더찾기-2012년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

2. 추진 경과

- 2016년~2018년 : 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충남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자문 의뢰

 -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시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거치게 되어 있음
 - 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충남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자문 의뢰
 - 연간 10여개 내외 조례에 대해 메일 또는 공문으로 의뢰, 도 담당자에 따라 편차가 있음
 - 원내 현안과제로 수행하기도 했으나 지속적이지 않음
- 2019년~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체계 마련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속적 의뢰(* 충청남도의회 법제사무처리 규정 제정(2019.5.20))
 - 원내 현안과제 형태로 수행(분기별 1개 과제, 원내 참여 컨설턴트 기여도 반영), 검토의견 서식 간소화
- 2023년: 의원발의조례 성별영향평가 현안과제 예산 수립

 - 외부 컨설턴트에 의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수당 예산편성
 - 원내 컨설턴트 부담 해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 제공

5

3. 추진 체계 및 업무 흐름



6

4. 2023년 의원발의조례 성별영향평가 추진 개요

* 외부 컨설턴트 안내

□ 추진 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 의하여 제안되는 경우로 나뉘는데, 의회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이로 인해 지방의회 의원이 제안하는 조례의 경우 도민 요구도와 체감도가 높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개정안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제·개정하는 자치 법규(조례·규칙)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의 심의·의결 전에 성별영향평가 실시(법 제5조 제1항 및 영 제4조)(성별영향평가지침. p.13)

- 이에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는 도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도 의회와 협력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의견을 제출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함

□ 목적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성차별적인 조례 입법을 방지하고 도민의 성별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자치법규 입법에 기여

7

4. 2023년 의원발의조례 성별영향평가 추진 개요

* 외부 컨설턴트 안내

□ 검토 사항

- 검토사항: 「2023년 성별영향평가지침」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점검포인트
 - *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참여, 성별 통계 생산
- 유의사항: 성별영향평가 점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만 개선의견 제시
- 작성서식(예시)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 000-000-0000)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원안동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참여, 성별통계 등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8

5. 의원발의조례안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 2022년도 컨설팅 추진 실적: 총 검토 개수 102건, 개선의견 38건

구 분	조례 건수	원안동의	개선의견	개선의견 제안비율(%)
1분기	33	17	16	48.5
2분기	19	14	5	26.3
3분기	29	18	11	37.9
4분기	21	15	6	28.6
계	102	64	38	37.3

9

5. 의원발의조례안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 2022년도 컨설팅 추진 실적: 총 검토 개수 102건, 개선의견 38건

위원회	조례건수	원안동의	개선의견	개선의견 제안비율(%)
기획경제위원회	17	12	5	29.4
농수산해양위원회	14	12	2	14.3
복지환경위원회	26	15	11	42.3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9	9	10	52.6
운영위원회	8	3	5	62.5
교육위원회	6	5	1	16.7
행정문화위원회	12	8	4	33.3
계	102	64	38	37.3

10

6. 반영 · 미반영 사례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별 특성)(반영)

1.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6.28., 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6조(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도지사는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2. <기존> 3. <기존> 4. <기존>	제6조(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도지사는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2. <기존> 3. <기존> 4. 재가암환자의 자조모임 및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5. <기존>	○ 재가암환자들의 자조모임의 구성을 통한 소통 및 정서적 안정, 재가암환자의 관리와 돌봄에 중사하는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2. 반영여부 : 반영

11

6. 반영 · 미반영 사례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별 특성)(반영)

1.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3.13., 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7조(지원 결정) (...)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제7조(지원 결정) (...) 2. 여성, 노인, 장애인, 영유아·어린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 성별 특성 고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 여성이 다수 밀집하여 거주/이용하며 자녀 동반 대피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임산부 이용 시설 등을 고려가 필요함 (*참고. 도내 폭력피해여성 보호·지원시설은 여성들이 다수 밀집, 자녀 동반 여성들도 존재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5조제4항에 따른 여성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긴급피난처 등) - 또한 법 시행령 제23조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7조(현재 제7조) : 화재예방 취약계층 확대 목적 반영(반영)

12

6. 반영·미반영 사례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별 특성, 성별 통계)(반영)

1.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2022.8.22., 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 경영 등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성별을 고려한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인 성비 및 농어업 경영 등 관련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17조(성인지 통계)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위에 따라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농어업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반영여부: 반영

○ **안 제4조 및 제7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반영함. (반영)

13

6. 반영·미반영 사례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성별 특성 반영, 성별 통계 미반영)

1.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2022.8.31., 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만화·웹툰의 선정성·폭력성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5. 만화·웹툰산업 수혜자 성별 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관련, 최근 만화·웹툰의 선정성과 여성혐오 등 유해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표현의 선정성, 여성혐오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적용 방안이 계획 단계에서 수립될 필요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통계),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은 인적(人的) 통계 작성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도록 의무화

2. 반영여부: 반영

○ **안 제3조제2항제4호**: 만화·웹툰 창작 시 표현의 선정성, 여성혐오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과 적용 방안이 계획 단계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반영함(반영)

○ **안 제3조제2항제5호**: 성별 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통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준수하고 있어 별도로 근거를 마련하지 않음(미반영)

14

II. 충청남도의회 내부의 추진체계와 추진근거

1. 충청남도의회 추진체계 및 추진근거

의회기구표



2. 충청남도의회 추진체계 및 추진근거

의회사무처



- 전문의원실
-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속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회에 대한 제공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 그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충청남도의회 법제사무처리 규정

- 제3조(입안시 유의사항) ①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의원 및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장이 초안을 작성한다.
- ② 자치법규 등은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 준판과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발의안은 발의 제1호 서식의 자치법규 등 입안시 검토사항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관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작성하되 자치법규 등이 시행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여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조례안 예고를 할 수 있다.
- ⑤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⑦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부패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 1] 의원발의 조례사무의 세부처리절차(제5조 관련)

구 분	처리부서	내 용
① 문제인지	의원 및 상임위원회	저지제의 정책이나 행정의 문제점 또는 불합리한 제도 발견 (입법의 필요성 판단)
②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의원 및 상임위원회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도론편, 협의 등)
③ 자료수집	의원 및 상임위원회	현황, 문제점, 통계, 타시(도·군)입법례, 관계법령 등
④ 조례안 요강작성	의원 및 상임위원회	제·개정사유, 필요성, 주요골자, 관계부서 및 기관, 예산소요 여부, 파생되는 문제점, 협회가 필요한 사항, 관련법령 등 사전검토
⑤ 집행기관과의 사전협의	의원 및 상임위원회	해당부서와 협의(이해관계자 및 단체와의 협의)
⑥ 초안작성	의원 및 상임위원회	입법형식, 체계, 용어, 문장 등 고려(전문위원과 협의) ※입법발의: 제칙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⑦ 상임위원회 접수	의원 및 상임위원회	
⑧ 집행부 등 의견수렴	상임위원회	관련부서 의견수렴(공문) -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예산정책담당관: 입법고문실도 및 합동검토제 (20일소요)
⑨ 입법안 확정	의원 및 상임위원회	제안이유, 주요골자, 신규조문대비표 등
⑩ 조례안예고	의원 및 상임위원회	5일 이상 공고(조례안예고 초일 미 산입)
⑪ 의사담당관 제출	의원 및 상임위원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10일 전까지 제출
⑫ 의사담당관 접수 및 상임위원회 통보	의사담당관	
⑬ 상임위원회 의결	소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없는 경우 본회의 의결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⑭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송

조례안 예고(예시)

충청남도 민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1호

발의연월일: 2022. 9. 2
발 의 자: 이현숙, 김옥수, 박기영, 오인환, 박정수, 안종혁, 신준욱, 이상근, 주진하, 최창홍, 윤기영, 김진택, 유성재, 김민우, 이완식, 이규문, 편삼희, 구형서, 이윤석, 신영호, 고영철, 이연희, 문희신, 박미옥, 이철수, 정병민, 김도훈 의원(27인)

1. 제정 이유

- 국내 민화·웹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에 따라 충청남도 민화·웹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문화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민화·웹툰산업 발전의 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나. 사업(안 제4조)
 - 민화·웹툰산업 관련 교육·행사·강연 지원 등에 관한 진흥 사업을 명시함

다. 재정지원(안 제5조)

- 민화·웹툰산업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하고자 근거를 마련함
- 라. 민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민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자문사항 등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 가. 충청남도 민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나. 관련법규
 - 민화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07호, 2020. 12. 22.)
 - 민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2022.08.31., 여성가족정책관)
-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2.08.23., 감사위원회)
- 마.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2.06.24., 교육법무담당관)
- 바. 비용주제서 미검부 사유서

조례안 예고(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 (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② 민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화·웹툰산업 진흥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민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 3. 민화·웹툰산업 진흥계획의 추진체계 4. 민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세련 마련 방안 5. 그 밖에 민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② 민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화·웹툰산업 진흥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민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 3. 민화·웹툰산업 진흥계획의 추진체계 4. 민화·웹툰산업 진흥·촉진할 여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5. 민화·웹툰산업 수혜자 차별 정책 집행 계획 관련 조항 6. 그 밖에 민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보급) 관련, 위그민화·웹툰의 선결성과 여성형오 등 유해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충남도가 민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지원을 받아 민화·웹툰을 창작하는 경우 표현의 선결성, 여성형오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적용방안이 계획 단계에서 수립될 필요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평등) 「통계법」 제6조(통계정책위원회의 지정 및 운영)은 인격(人的) 통계 작성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정부사업 추진시 생산되는 보고 통계(사업실적보고)가 성별 구분 통계로 생산될 필요성이 있음. 본 진흥사업의 주요 사업에는 단체, 전문인의 양성, 창업지원 등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성별 통계 생산 방안이 명시되어야 함
제6조(민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민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경우 독립직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2. 반영여부

- **안 제3조제2항제4호**: 민화·웹툰 창작 시 표현의 선결성, 여성형오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과 적용 방안이 계획 단계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반영(반영)
- **안 제3조제2항제5호**: 성별 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통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준수하고 있어 별도로 근거를 마련하지 않음(미반영)
- **안 제6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반영(미반영)

조례안 예고(예시)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 검토의견 [감사위원회]

지침범위 명	충청남도 민화·웹문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안주부부서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발의일	2022. 6. 23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p>제3조(민화·웹문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민화·웹문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민화·웹문산업 진흥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추진 2. 민화·웹문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의 수립 3. 민화·웹문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4.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을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화·웹문산업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화·웹문산업 관련 기관·단체·학교·연구소·기업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화·웹문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민화·웹문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 이해충돌 가능성 있음 - 심의 위원의 사적 이해 관계 개입될 소지 있음</p>	<p>○ 민화·웹문 진흥위원회의 위원의 사적인 이해 개입 방지 등을 위한 위원의 재적·기회·도외 규정 및 사후통제 수단인 위원 해임·해촉 등 마련 필요</p>	

2. 반영여부

○ **안 제6조**: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에 위원의 제적·기회·회피에 대한 근거가 있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미반영(미반영)

Ⅲ. 추진상 애로사항 및 향후 개선과제

1. 한계 및 애로사항

- **의원발의조례 성별영향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컨설팅 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센터와 원내 컨설턴트 업무 부담 증가,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검토 한계**
 - * 2023년 현안과제 예산 편성으로 기존의 어려움 상당부분 해소
- **의회와 성별센터 간 직접적 교류·소통이 부재한 상태로 실무적인 업무처리 수행**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발전적 방향 토론 부족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미반영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 부족
- **의원발의조례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관리 미흡**
- **출연기관 의회 업무보고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의견에 대한 지적·대응 필요**

23

2. 향후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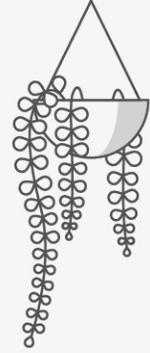
- **의원발의조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사업 질적 개선**
 - 컨설팅 작성 서식(점검항목별 분류), 검토의견 목록화, 정책개선 이행여부 점검 등
- **충남도의회 성인지적 입법을 위한 전문가 역량강화 필요**
 -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원, 전문위원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지자체 조례에 대한 이해, 성인지 관점에서의 검토 역량 강화
- **충청남도의회·집행부·성별영향평가센터 협의체 운영**
 -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공감대 마련·토론 실시
- **의원발의 조례안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 **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성인지 검토 체계 마련**

24

감 사 합 니 다.



발표 2



제주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현황과 과제

이 화 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제주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현황과 과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화진

목차

1. 조례 성별영향평가 개요
2. 조례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
3.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
4. 조례 컨설팅 영역별 사례

1. 조례 성별영향평가 개요

조례 성별영향평가 목적 및 필요성

성별영향평가: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는 제도

대상: 공공기관이 수립한 계획, 사업, 법령

법령 성별영향평가: 중앙부처의 법령, 지방의 조례 포함
- 의원발의 조례는 실시하지 못했음

제주지역 조례 성별영향평가 실시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2020)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 : 성별구분, 고정관념

항목	점검 포인트
1-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p>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예) 혼·포장 수여 시 남성과 여성의 혼장 크기를 달리하는 규정</p>
	<p>1-2.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여부 예)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시 상시여성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시,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고정관념</p>
	<p>1-3. 법령 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예)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대상에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남녀근로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함</p>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 성별특성

항목	점검 포인트
1-2. 성별 특성	<p>2.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 -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 : 성별균형참여

항목	점검 포인트
1-3. 성별 균형 참여	<p>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p>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는지 점검

법령성별영향평가 지표 : 성별통계

항목	점검 포인트
1-4. 성별 통계	<p>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점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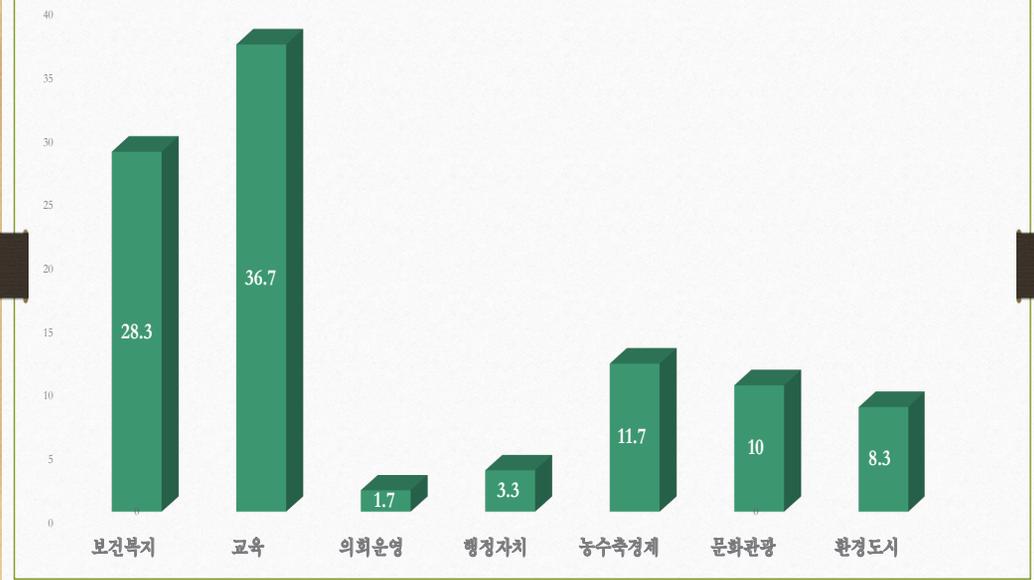
2. 조례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

도의회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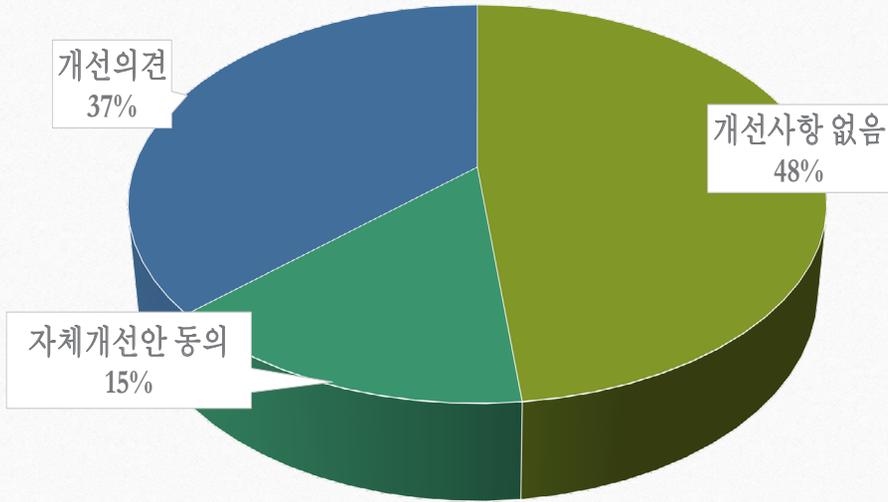
입법 단계	추진 내용	추진 주체
입법예고 및 상임위 심사 전	컨설팅 의뢰	정책자문의원 → 센터
	↓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	
	컨설팅 의견 발송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 도의회 총무담당관 → 정책자문위원
(※ 최소 추진 시기로 적용)	↓	
지방의회 이송 전	컨설팅 반영 (개선건의의 경우: 반영 계획)	도의회 정책자문의원 <계획> → 센터 <관리 및 향후 모니터링>

3.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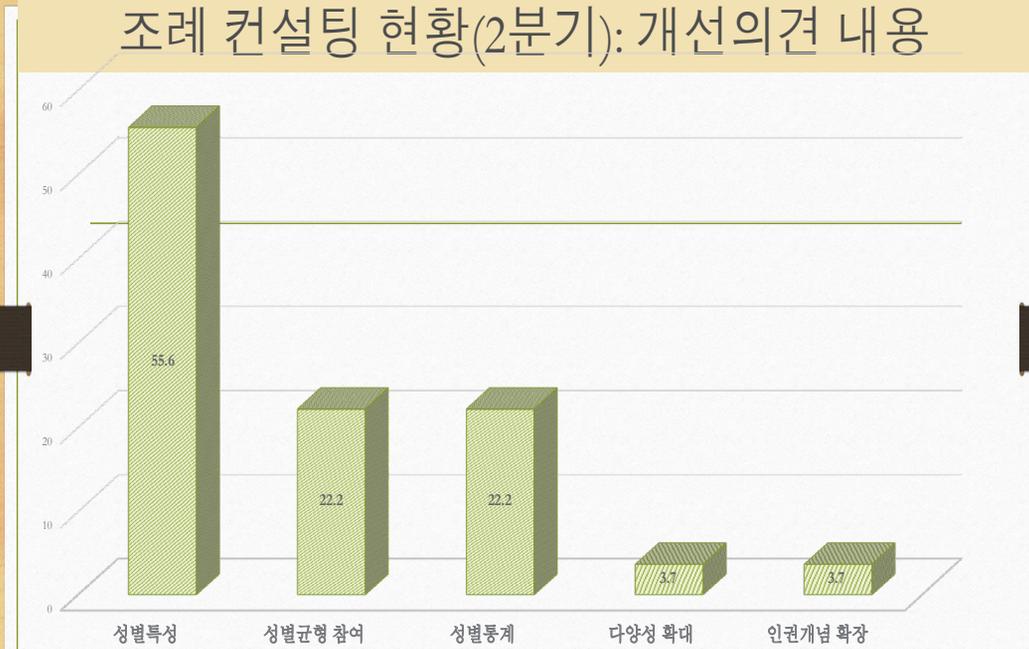
조례 컨설팅 현황(2분기) : 상임위원회별 컨설팅



조례 컨설팅 현황(2분기) : 검토의견



조례 컨설팅 현황(2분기): 개선건의 내용



4. 영역별 컨설팅 사례

시설 :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검토사유
제4조(안전관리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4조(안전관리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시 세대와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 운동특성, 종목선호도 차이 등으로 인해 시간대별, 장소별, 형태별 이용현황 및 안전사고 유형이 다르며 체육활동에 대한 안전인식 및 대처 등에서도 차이가 있음

시설 :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검토사유
제7조(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시 고려사항) 2항.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범죄예방 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하여 한다.	제7조(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시 고려사항) 2항.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4호에 따라, 범죄예방 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을 우선 적용하여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시행 2021.12.31.)에 따라, 공공의 성격 을 가진 시설물의 신설, 증·개축, 증·개 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시 유니버설 디 자인을 적용하도록 함 따라서 제7조 학교복합시설 설치 조성 시 여성, 장애인, 아동 등을 고려한 유니 버설 디자인을 적용
제12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생략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해당학교 학생 1명	제12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생략 ② 운영협의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해당학교 학생 2명	제12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참여를 고려하며 해당학교 학생의 경우, 다른 위원과 동수로 구성하 여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설 :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개선안	검토사유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 는 (...) 제주특별자치 도 관내 보도점자블록 설 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 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 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 별 이동 패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사 및 돌봄에 따른 이동 패턴 에 성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장애인의 보도점자 블록 설치 및 관리 시, 성별 이동 패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8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 제주특별자치도보 도점자블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 제주특별자치도보도점자블록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 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제주특별 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비 균형을 고 려하도록 하고 있음.

시설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개선안	검토사유
제5조(설치 우선순위) 3호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도서관 주변과 학생들의 등·하교길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지역(학교 및 도서관 주변, 학생들의 등·하교길, 여성안심귀갓길)	여성들의 안전한 야간보행을 위해 가로등 설치와 안전시설(cctv) 설치수요가 많음, 아동 청소년 뿐 아니라 여성의 안심귀가를 위한 조명시설 설치 고려
제6조(설치제한) 1호. (생략) 2호,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설치제한) 1호. (생략) 2호,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의 타겟 및 야간 보행시, 불안이 우려되기에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별지 제1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 주민 수의 성별란 신설	주민 수의 성별란 신설하여 성별 통계 기초 자료 구축

안전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및 소방설비 등 지원

조례안	개선안	검토사유
제5조(화재예방강화지구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4. 화재예방 강화지구 화재안전조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제5조(화재예방강화지구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4. 화재예방 강화지구 화재안전조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단, 안전조사 및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계획 수립 시 안전취약계층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하여 1인 여성 가구, 돌봄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재난 취약대상 에 대한 화재 대응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함.
제11조(지원결정)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제11조(지원결정)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유아 동반 보호자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재난취약자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임산부 및 유아 동반 보호자 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안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검토사유
제6조(학교숲 조성 기준) 도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생략) 7. 안정성 확보: 조성 및 관리 활용 시 안전을 위한 대책 및 관리를 위한 시설 확보	제6조(학교숲 조성 기준) 도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생략) 7. 안정성 확보: 조성 및 관리 활용 시 안전을 위한 대책 및 관리를 위한 시설 확보. <u>시설 설계 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고려한다.</u>	안전성 확보 시 범죄예방 설계를 고려하여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 유발 요인 감소

안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개선안	검토사유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 중 <u>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u> 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피해가구에 지원함으로써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u>세대주 중심으로 지원됨으로써 차별 발생.</u>
제11조(구성 및 운영) 1.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장 또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제11조(구성 및 운영) 1.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장 또는 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성회장 2. <u>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용소방대장 또는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u> 5. <u>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u> 6. <u>그 밖에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참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임직원</u>	여성의용소방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성의용소방대 별도의 위원 위촉으로 <u>성별 균형 고려</u> 및 화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때 <u>피해 지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단체</u> 등을 고려한 위원 구성 제안

청소년 :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개선안	검토사유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종, 장애, 학력, 병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본 조례의 경우, 위원 위촉 시 '특정 성의 초과 구성' 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지 조항이 필요함. 또한, 지역, 나이, 성별을 포함하여 청소년 구성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의 범위를 포괄하도록 함

청소년 :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검토사유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② 생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② 생략 ③ 도지사는 청소년 부모가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임신, 출산, 가족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학교와 가정은 비롯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인권보호와 평등의 가치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제6조(지원사업) 1항(생략) 1호 청소년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제6조(지원사업) 1항(생략) 1호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청소년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구 상, 청소년 임신부로 설정할 필요가 없기에 용어 변경 검토 바람

청소년 :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개선안	검토사유
제2조(정의) (생략) 1. “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제주자치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 청소년 ”이란 「 청소년기본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이라는 명시를 함으로써 ‘재학중인 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
제5조(선발방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청소년의회 의원을 선발한다.	제5조(선발방법) ① 생략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의 청소년 가운데 장애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 이주배경청소년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 성별, 나이 등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특정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정 필요

청소년 : 학생 불균형 체형예방 및 관리지원

조례안	개선안	검토사유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지원을 위해 매년 학생 불균형 체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지원을 위해 매년 학생 불균형 체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한다.	학생 불균형 체형 상태별 성별 기초 통계 구축
제7조(홍보) 도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바른 생활자세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홍보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생략) 단, 홍보물에는 성별 고정관념 혹은 성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기 왜곡된 신체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시, 성평등한 홍보물 환경 필요

기타 :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검토사유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u>단, 실태조사 시, 조항 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u>	실태조사 시 성별 란을 마련하여 성별 통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
(신설)	제8조(2차 피해 방지) ① 도지사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차 피해 방지를 통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지원 체계 마련

기타 :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개선안	검토사유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③ (생략) <u>단, 현장해설 제공 시 성별고정관념 및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u> ④ (생략) <u>단,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성인지 감수성 관련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u>	현장해설 시, 내용이나 현장 인력 배치 등에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 교육 필요.

기타: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	개선안	검토사유
제4조(신고대상) 3. <u>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u>	제4조(신고대상) (생략) <u>(신설) 4. 고독사 위험, 단전·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u> <u>(신설) 5. 소외·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u> <u>(신설) 6.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u>	사회적 단절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한 적용 및 가구 구성원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폭력에 노출된 가구 구성원에 대한 적극적 발굴 및 지원 정책의 확대 필요

기타: 농업 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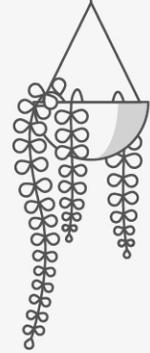
조례안	개선안	검토사유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생략)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③ (생략) <u>(신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강사 및 교육 내용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연령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u>	농업마이스터 전문가의 성비 불균형 및 자격기준 중 농업 경력 등으로 인해 여성이나 청년 농업인의 접근성 취약한 분야로 시행 계획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제6조(평가 등) (생략) 1. (생략) 2. <u>농업마이스터의 영농통계 및 활동현황</u>	제6조(평가 등) 1. (생략) 2. <u>농업마이스터의 영농통계 및 활동현황. 단, 통계 작성 시 성별분리통계 구축</u>	농업마이스터 교육의 강사 및 전문가 비율에서의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남. 성별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마이스터 참여 현황 파악으로 농업마이스터 여성 전문가 양성 또는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 구축

향후 과제

- 성주류화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 조례 성별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보완
- 관련기관의 협력 및 네트워킹 강화(의회, 행정, 센터, 민간전문가 등)
- 도의회 성주류화 정책의 안정적 시스템
(인력, 예산, 시스템 구축 등)



토론문



- **고명희**(모두의 상담소 아워 대표)
- **조은희**(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선민정**(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 **김은정**(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성인지정책팀장)



토 론 문

고 명 희

(모두의상담소 아워 대표)

최근 모 기관에서 강의 요청을 하면서, 기관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다루어 주었으면 했다. 마침, 해당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했던 기억이 있어 성별영향평가 시 제출했던 의견이 조례 제정에 반영이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제정된 조례에서는 제시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히려 의견을 제출한 조문의 내용이 삭제되거나 문항 자체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후 센터에 개선안이 제출된 조례에 대해 의회에서 수용 또는 불수용과 관련한 환류가 되고 있는지 문의했고, 이에 대해서 의회와 연계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성별영향평가는 무엇보다 정책이나 제도 등에서 환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이후 변화되는 정책이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의회와의 사전 협의에서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더라도 조례 제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컨설팅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지, 제정된 조례의 조문에 개선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이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의회 역시 의원 발의 조례와 관련한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나 필요성에 대한 것 보다 의무 제출이라는 명목만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과 더불어 성별영향평가제도와 함께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의의, 평가항목에 대한 주요 쟁점 그리고 평가서 작성 방법 및 개선의견 등에 대한 적극적 반응을 위한 상호 작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의회나 센터가 각자 영역에서 취해야할 입장과 조례 제정 과정에서 상호 협력에 의한 성평등 관점의 반영이 의회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며, 성평등을 실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2014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제주도 사업 및 정

책, '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서, 2019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기본조례」 제10조(도의회 성별영향평가)의 1항에서는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원이 제·개정하는 조례 또는 규칙의 심사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도의회 성별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명문화되었다.

〈성평등 기본조례〉가 시행되면서 추진 기반을 갖춘 도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앞으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고, 의회 성평등이 곧 도민의 성평등 의식과 연결됨을 인식하며 제주도민의 성평등 의식향상과 일상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의 확대를 기대해 본다.

토 론 문

조 은 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I.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와 목적

1. 헌법 제11조- 평등, 성차별금지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2.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협약

위 협약은 여성인권을 위한 포괄적인 법률로서 법령은 전문을 포함하여 총 6부,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차별에 대한 정의 및 양성평등의 원리, 그리고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를 밝히고 있다. 한국은 1984년 12월 협약에 비준 하였으며, 2015년 7월 제8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8년 2월 22일(제네바 유엔본부 현지시간 기준) CEDAW 제69차 세션에서 동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a)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

- (b)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
- (c) 남성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권한 있는 국내 법정과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성을 여하한 차별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확보할 것
- (d)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며 공공 당국과 기관이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
- (e)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f)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g)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

3.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2014년 전면개정을 통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8. 3. 27.>

4. 성별영향평가법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별에 따른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별도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법안이 만들고자 시도하게 되었으며, 2011년 성별분석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8년 법명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수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동법 제2조 1호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3. 27.>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도의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5.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

제12조(양성평등담당관 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하고, 담당을 “양성평등담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담당관 및 양성평등담당의 총괄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인 기획조정실장이 하며, 세부운영은 성평등정책관이 한다.

③ 양성평등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은 성인지 정책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별영향평가

2. 성인지예산 및 결산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는 2019. 7.10., 제정되어 시행 2020. 1. 1. 이후 시행되고 있다.

동조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도의회의 성평등한 정책결정과 정치영역에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성 주류화 조치) ① 도의회 의장은 조례의 제·개정, 예산 및 결산의 심사 등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도의회 성별영향평가) ①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원이 제·개정하는 조례 또는 규칙의 심사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도의회 성별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법」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내 성별영향평가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의회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에서 정한다.

II. 맺으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당시 여성발전기본법) 여기서 성별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지 않았고,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개정 2018. 3. 27.> 이에 그 후 ‘성별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하는 것일 뿐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던 한계가 있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의회의 입법 시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성평등한 지방자치도가 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차별철폐협약,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위 조례는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헌법 제11조에는 아직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독일 헌법 제3조 제2항에서는 국가가 ‘양성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조항에도 실질적 평등은 헌법개정을 통해 명시되어야 할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16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며, 이에 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다른 16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의원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이것이 그 기본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좋은 사례로 본보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토 론 문

선 민 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결과¹⁾

-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과제로 2021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실시하였음. 도에서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조례, 시행규칙)는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미 제정된 자치법규 중 성차별적인 규정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서 기 제정된 자치법규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음
- 1,039개의 전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조례, 시행규칙)(2021. 4. 19. 기준)를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평가지표는 여성가족부의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사용했으며, 해당 지표는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로 4영역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인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총 389개였음
 - 분야별로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 수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개, '교육' 분야 9개, '교통 및 물류' 분야 10개, '농림' 분야 31개, '문화체육관광' 분야 80개, '보건' 분야 18개, '사회복지' 분야 57개, '산업·통상·중소기업' 분야 11개, '일반공공행정' 분야 74개, '재정·세제·금융' 분야 4개, '지역개발' 분야 12개, '통일·외교' 분야 6개, '해양수산' 분야 16개, '환경' 분야 46개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요구 건수는 총 495건이었음
 - 지표별로 개선 요구 건수를 보면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에서는 14건, '성별 특성' 지표에서는 77건, '성별 균형 참여' 지표에서는 253건, '성별 통계' 지표에서는 151건이었음
 - 분야별로 개선 요구 건수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0건, '교육' 분야 12건, '교통 및 물류' 분야 11건, '농림' 분야 38건, '문화체육관광' 분야 118건, '보건' 분야 21건,

1) 선민정·김엘림·고명희·강지영·오윤정·이연화(202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참조.

‘사회복지’ 분야 75건, ‘산업·통상·중소기업’ 분야 11건, ‘일반공공행정’ 분야 86건, ‘재정·세제·금융’ 분야 5건, ‘지역개발’ 분야 19건, ‘통일·외교’ 분야 9건, ‘해양수산’ 분야 18건, ‘환경’ 분야 52건이었음

〈표 1〉 성인지적 개선 요구 자치법규 수 및 건수 현황

분야	검토한 자치법규 수(개)	개선 요구 자치법규 수(개)	자치법규의 성인지적 개선 요구 건수(건)				
			합계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
1. 공공질서 및 안전	55	15	20	3	2	11	4
2. 교육	20	9	12	0	2	4	6
3. 교통 및 물류	62	10	11	0	5	4	2
4. 농림	91	31	38	0	5	26	7
5. 문화·체육·관광	127	80	118	3	20	45	50
6. 보건	47	18	21	0	5	9	7
7. 사회복지	128	57	75	3	20	32	20
8. 산업·통상·중소기업	46	11	11	0	0	11	0
9. 일반공공행정	300	74	86	5	9	58	14
10. 재정·세제·금융	14	4	5	0	0	2	3
11. 지역개발	24	12	19	0	4	10	5
12. 통일·외교	11	6	9	0	0	7	2
13. 해양수산	31	16	18	0	0	9	9
14. 환경	83	46	52	0	5	25	22
총 합계	1,039	389	495	14	77	253	151

주: 선민정 · 김엘림 · 고명희 · 강지영 · 오윤정 · 이연화(202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참조.

-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는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서에 정책 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을 하였음. 이에 따라 제주도 각 부서에서는 연구결과에 따른 성인지적이지 못한 사안에 대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였음
- 이처럼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성인지적이지 못한 사안을 개선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

2. 의원 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 올해 처음으로 제주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다만 제주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할 것임. 해당 평가의 운영체계나 지속적인 예산 확보, 성별영향평가 내·외부 컨설턴트의 활동 등에 대한 안정화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의원 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도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임. 따라서 의원 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 수용 정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 의원 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수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도의회의 의원과 정책연구위원 등 조례 제개정에 관여하는 관계자들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조례 내용'을 포함하여 성인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함. 이러한 성인지 교육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와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등의 협업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토 론 문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요 및 추진 결과

김 은 정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성인지정책팀장)

I. 개 요

□ 법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 평가대상

- 도지사가 제정 ·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지방재정법 제41조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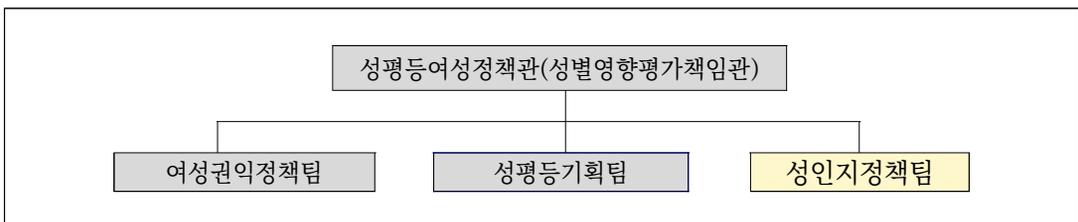
□ 추진방법

성별영향평가 시스템(GIA) 을 통하여 평가서 제출 및 반영결과처리 등의 절차 진행

□ 행정체계

1)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평등여성정책관)

- 도 성별영향평가제도 총괄 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성인지정책팀)'
- 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평등여성정책관



2)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 지정

〈 양성평등담당관의 지정 〉



〈 양성평등담당관의 역할 〉

구 분	직 책	업무 수행 내용
양성평등 담당관	부서장	- 부서 내 양성평등업무 총괄 - 양성평등 관리직 네트워크 구축 및 주요 사항 전달
양성평등 담당	부서 주무팀장	- 성별영향평가사업 및 성별분리통계 관리 - 성인지예산 및 결산 - 부서 내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 성인지 교육 우선 참여 및 관련 내용 부서 전파 등
양성평등 담당자	-	- 양성평등 담당을 보좌하여 부서내 양성평등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담당 - 예산담당자, 서무, 사업담당자 등 부서별 특성에 따라 지정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관리카드】

1. 일반사항

부서명			
1) 성평등목표			
2) 운영자	(담당관)	연락처	
	(담당)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추진상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상추진 <input type="checkbox"/> 일부추진 <input type="checkbox"/> 추진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성인지정책 체크리스트

추진 항목		내 용	
성별 영향 평가	법령 · 계획	3) 성별영향평가 과제명	- 자치법규명(조례 또는 시행규칙) : -
		3-1) 성평등 조치 사항 이행여부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개선사항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또는 개선의견으로 통보 받은 경우 · 개선 사항 내용 : · 개선 사항 이행 내용 :
			(생 략)

II.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① 총 괄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포함)에서 추진한 법령, 사업,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총 343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현황을 보면 법령 143건(41.7%) , 사업 187건(54.5%), 계획 4건(1.2%), 홍보물(2.6%) 9건에 대한 과제를 실시하였고, 기관별로는 도 217개 과제(63.3%), 제주시 66개 과제(19.2%), 서귀포시 60개 과제(17.5%)를 추진하였다.

〈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

(단위: 건)

구분	총계		법령		계획		사업		정부홍보		비 고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계	356	343	150	143	1	4	199	187	6	9	
도	224	217	150	143	1	2	68	63	5	9	
제주시	70	66	-	-	-	1	70	65	-	-	
서귀포시	62	60	-	-	-	1	61	59	1	-	

②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운영 개요

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부서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법령안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성별영향평가 총괄부서에서 이를 검토한다.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제·개정안에 대하여 실시하는데 제정안은 전문에 대해, 개정안은 개정되는 조항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2022년 운영 현황

2022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143건으로 전년 대비 7건(4.6%) 감소하였다.

〈 연도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현황 〉

(단위: 건)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치법규수	129	137	137	150	143

세부적으로, 자치법규 가운데 조례는 106건(74.1%), 규칙은 37건(25.8%)으로 나타났다.

〈 2022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세부 운영내역 I 〉

(단위: 건, (%))

총계	자치법규 유형	
	조례	규칙
143	106(74.1)	37(25.8)

부서별로는 총 47개의 부서가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검토 의뢰하였으며 수산정책과 14건(9.7%) 정책기획관 13건(9.1%), 세정담당관 11건(7.7%)순이다.

〈 2022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세부 운영내역Ⅱ 〉

단위: 건(%)

총계	부서	제·개정 자치법규
143	수산정책과	14(9.7)
	정책기획관	13(9.1)
	세정담당관	11(7.7)
	여성가족청소년과	8(5.6)
	자치행정과	8(5.6)
	문화정책과	6(4.2)
	기타	83(58.0)

□ 2022년 추진결과

- 2022년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성별영향평가 제외대상은 32건(22.4%)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1건(77.6%)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중 성차별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동의한 법령은 66건(46.1%)이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자체 개선안을 제출한 법령은 28건(19.6%)이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개선의견을 통보한 법령은 17건(11.9%)이다. 한편, 통보된 개선의견에 대해 모든 법령이 반영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반영계획서 제출한 법령중 개선의견을 수용한 법령은 13건(76.5%)이다.

〈2022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

(단위 : 건, (%))

구분	대상 과제수	제외 대상 ¹⁾	원안 동의 ²⁾	자체개선안 동의 ³⁾	개선 의견 ⁴⁾	개선의견 수용율 ⁵⁾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14 3(100.0)	32 (22.4)	66 (46.1)	28 (19.6)	17 (11.9)	13 (76.5)

- 1) 제외대상 : 폐지법령, 직제규정,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제명 및 문구등을 단순변경하는 사항 등
- 2) 원안동의: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개선의견없음으로 원안 동의
- 3) 자체개선안 동의: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의 자체개선안에 동의
- 4) 개선의견: 성평등을 위해 제·개정 법령안을 개선하기위한 안을 통보
- 5) 개선의견수용율: 검토의견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해당부서가 제출한 반영계획서의 내용이 개선의견 수용, 일부수용인 비율

- 자체 개선 및 개선의견 주요 내용은 성별영향평가 항목 성별 균형 참여 및 성별 통계, 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성하도록 명시,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란을 마련하여 성별 구분 통계 생산 등이다.

□ 2022년 주요 자치법규 개선 사례

- 주요 자치법규 개선사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안」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인적사항에 성별란을 기입하여 성별통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
 - 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제9조(청년정책연구 등)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년에 한 차례 이상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항목에는 성별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부분을 신설.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함으로써 여성의 참여율 제고

Blank lined area for text input, consisting of multiple horizontal dotted lines.

Blank lined area for text input.

Blank lined area for content.